

의안번호	제 525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강현삼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6년 11월 22일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현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5
----------	-----

발의연월일 : 2016. 11. 22.

발의자 : 강현삼, 임순목, 이광진,
김봉희, 박병진, 장선배,
박우양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규정에 조례의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 사항을 법령을 인용하여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시설은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소방시설의 고장난 상태 방치와 복도, 계단 등 출입구 폐쇄·훼손 행위 등에 대한 신고대상 범위를 명확히 정함(안 제3조)
- 다. 신고 방법, 신고 처리와 불법행위 현장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고 내용을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정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마. 포상금 등의 지급 절차와 금액 등을 정하고, 지급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와

처리 결과의 통지 방법을 명확히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포상금 등 지급대상자 해당여부와 지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누설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사. 포상금 등을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한 경우 환수 할 수 있도록 환수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붙임

다. 협의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와 협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 '16. 11. 8. ~ '16. 11. 13.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 따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석·적용상의 주의) 이 조례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포상금 등 지급 대상) ① 신고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

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3. 운수시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6. 복합건축물(제2호나 제4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충청북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1) 수신반(受信盤) 전원

2) 동력(감시)제어반

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

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4조(신고 방법) 불법행위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 처리)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 등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 등은 신고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보완 요청) ① 소방서장 등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 등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소방서장 등은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제9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소방서장 등이 현장 확인 결과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포상금 등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물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서의 거주지로 송달한다.

③ 포상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2.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

④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

⑥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제9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소방서장 등은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 방법을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 등은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① 포상금 등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부서의 계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 등은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하여 그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환수) 소방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포상금 등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제3조 관련)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목적일시	년 월 일 시 분			
	신고기관				
	대상건물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선택)	〈구체적 사실 기술〉
	1. 제2조 ②항의 1호의 불법행위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1) 수신반(受信盤) 전원 2) 동력(감시)제어반 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2. 제2조 ②항의 2호의 불법행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3. 제2조 ②항의 3호의 불법행위 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 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위와 같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위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					
※ 붙임자료					
○ 사진 및 영상 등의 자료는 2방향 이상에서 촬영하여 불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소방시설 등 대한 불법행위 신고사항 확인조서(제4조 관련)

신 고 대상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신 고 내 용	접수일자					
	신고요지					
확 인 및 처 리 사 항	확인일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처분일자)					
	위반업소 현 황	상 호 (업 종)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 붙임자료 : 사진 또는 영상 및 기타 자료

주) 처분내역 란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사항 모두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소방시설 등 대한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제9조 관련)

1. 포상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포상심사내용			
포상심사의뢰기관		심사의뢰서 접수일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신고요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포상금 지급기준			
3. 포상결정내용			
포상내용			
포상 결정사유			

〈별지 제5호 서식〉

제 차 소방시설 등 대한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 회의록(제9조 관련)

1. 회의일자	
2. 회의장소	
3. 참석자	의 명
4. 회의안건	1. 2. 3.
5. 회의결과	
6. 첨부서류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6.1.27.>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④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 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지설을 설치할 것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

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의 개정에 따른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운영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대상물의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소요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6조(포상금등의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신고자 포상금 지급

나. 추계의 전제

- 연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시 지원

다. 추계결과 : '16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5백만원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등의 재원 조달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사업비	합계	15	3	3	3	3	3
	도비	15	3	3	3	3	3
	시·군비						
신고예상 건수		300건	60건	60건	60건	60건	60건

6. 작성자 : 대응예방과장 김상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3	3	3	3	3	15
신고 포상금	3	3	3	3	3	15
재원 조달	3	3	3	3	3	1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3	3	3	3	3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민간 자부담)						

※ 현재 『충청북도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금 예산이 2010년부터 반영, 운용되고 있음.

⇒ 신고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건수 증가 예산의 예산 증액 편성.